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2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김대식·곽규택·김기현

고동진 • 주진우 • 박성훈

김민전 · 김예지 · 백종헌

서지영 · 조경태 · 박성민

정성국 · 조정훈 · 김용태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,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,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, 현장의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.

이에,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, 학교폭력 조사·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,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,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.

다만,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, 관계개선과 교육적

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.

이에,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,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(책무)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신설).

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갈등조정, 관계개선,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학교폭력 조사・상담 등)	제11조의2(학교폭력 조사·상담 등)
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	①
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	
의 조사·상담 등을 수행할 수	
있다.	<b>–</b> .
<u> &lt;신 설&gt;</u>	1. 갈등조정, 관계개선, 관계회
	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
	담 조기 지원
<u>1.</u> ~ <u>6.</u> (생 략)	<u>2.</u> ~ <u>7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6
	호까지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